예품노인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중 발췌)

제5조 (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계약을 통한 명문화로 수급권 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용자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계약방법)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문서(공정거래위원회 승인받은 약관)로서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의사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기관과 이용자(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① 기관(요양요원)의 의무

1.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3.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예품제공 의무
4. 이용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②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1.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2.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할 통보 의무
4.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5.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규칙 이행의 의무

③ 이용자(보호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요원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2. 이용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2. 이용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이용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8조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반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상담, 욕구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원하는 이용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상호 계약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급여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③ 월 이용료는 고시에서 정한 수가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만큼 산정하며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의 규정을 따른다.

④ 방문요양급여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도움
2.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4.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⑤ 방문목욕 급여는 차량 내 목욕급여와 가정 내 목욕급여로 구분한다.

⑥ 방문 간호는 법에서 정한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이용자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의 제공을 말한다.

⑦ 방문목욕 서비스 세부사항(표)은 아래와 같다.

구분	서비스내용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⑧ 방문요양 서비스(요양보호사 급여제공 가능 서비스) 세부사항(표)은 아래와 같다.

구분	서비스내용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 양치, 틀니손질, 물품 준비 및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물품 준비 및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물품 준비 및 정리
옷 갈아입히기	의복준비,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옷 갈아입히기, 물품 준비 및 정리
식사도움	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물품 준비 및 정리
취사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장정리, 옷장, 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외출시 동행	산책/장보기/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 책임 귀가
일상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 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⑨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불가능 서비스 세부사항(표)은 아래와 같다.

구분		서비스내용
신체지원 서비스	배설도움	적변, 관장, 방광세척, 인공항문 등의 교환 배뇨 카테이텔의 세정, 소독 등
	식사도움	튜브, 카테이텔의 삽입, 경관영양 주입
	기타	욕창의 처치, 연고 등의 도포, 좌약의 삽입 의료행위에 유사한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조리	대상자 이외 분의 조리 기념일, 명절 등의 특별한 계절요리(김장, 제사명절 음식 등)
	청소	수급자 이외 가족이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대청소 큰 가구 등의 이동 재배치 정원 청소, 김매기, 식목이나 풀꽃의 손질 자가용차의 세차, 청소
	세탁	수급자 본인 이외의 분의 세탁
	기타	옥내 외의 목수 일, 애완동물의 돌봄, 손님의 접대 등
일상생활	병원	입원 중, 입퇴원시 간병

지원서비스	외출도움	요양보호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사용한 외출

제9조 (급여제공기준)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는 이용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유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지원(세면, 목욕, 양치,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이용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3. 정서 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4.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용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하여 계약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방문요양 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이용자 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이용자의 잔존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 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방문요양 및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후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매달 급여제공 전에 이용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다.. 치매가 있는 이용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라.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 보관

7. 5등급 이용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 야간보호급여제공시간 전 · 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일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주 · 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 · 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

8.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이용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 할 수 없다

제10조 (서비스제공 시 유의사항) 요양요원은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1회 최대 3시간 이내(1~2등급의 경우 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1일 3회 방문까지 할 수 있고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심야(22~06시)와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의 경우 30%를 가산한다.

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고시 제18조 가-2의 수가를 월 20회로 산정한다.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부부이면서 65세 이상일 경우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공단이 인정한 경우 고시 제18조 가-3 수가를 일수와 관계없이 매일 인정한다

2. 방문목욕 서비스

가. 요양보호자 2명이 욕조 등을 이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나.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된다.

다. 차량 미 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는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며,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미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라. 60분 미만 40분 이상의 목욕을 제공했을 경우 해당 수가의 80%를 산정한다

제11조 (급여비용)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은 '고시'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15%
- 의료 수급자: 0%
- 감경 대상자: 6% 또는 9%

구분	비율	내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6%, 9%	감경대상자
	0%	의료수급자 면제

② 본인 일부부담금은 이용자의 자격 또는 감경기준에 따른 비율로 수납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납하지 아니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6일 06:00~20: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2) 월~토요일, 상근직 08:30~17:30, 시간제 06:00~20: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

1)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23년도 기준, 추후 해마다 변경되는 기준 참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3년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2)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가-1	30분 이상	16,190	2,428
가-2	60분 이상	23,480	3,522
가-3	90분 이상	31,650	4,747
가-4	120분 이상	40,280	6,042
가-5	150분 이상	46,970	7,045
가-6	180분 이상	52,880	7,932
가-7	210분 이상	58,930	8,839
가-8	240분 이상	65,000	9,750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 적용, 본인부담금 15% 적용

-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 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82,160	12,324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74,070	11,110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 목욕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된다.
 ②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5) 방문목욕 이동목욕차량 이용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금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적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한다. 다만, 변 실금 및 요실금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⑥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내용 변경사항 안내 및 이를 즉시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고시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변동으로 본인 부담금 비율이 변경된 경우
4. 비급여비용 수납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맞춤형 프로그램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 하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은 급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급여제공이 불가할 정도로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보호자와 급여계약의 해제가 합의된 때
4.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급여대상자 또는 가족이 담당 요양보호사에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6. 이용자가 급여계약 해제를 요청한 때
7.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이용자의 비용부담액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